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2,231,674	16,266,950
일반회계	451,370,341	13,541,110
특별회계	90,861,333	2,725,840
공기업특별회계	33,856,969	1,015,709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3,856,969	1,015,709
기타특별회계	57,004,364	1,710,131
원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사업	30,569,690	917,091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6,893,394	506,802
농공지구조성사업	620,977	18,629
의료급여기금운영	1,716,851	51,506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091,400	32,742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5,933,399	178,002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78,653	5,3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733,997천원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5,636,60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